

대전지방법원 2016. 9. 7 선고 2015가단21814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피고 인수참가인C

변론 종결2016. 8. 24.

판결 선고2016. 9. 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는 757,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4. 18.부터 2016. 9. 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
값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인수참가인은,

1) 세종특별자치시 D 답 935m² 중 별지 도면 표시 21, 22, 23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
'ㄷ'부분 1m², 별지 도면 표시 24, 25, 26, 27, 28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ㄹ'부분 1m²,
별지 도면 표시 28, 27, 29, 30, 31,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ㅁ'부분 40m² 각 지상에
있는 조적조 건물을 각 철거하고,

2) 별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토지
97㎡를 인도하며,

3) 2016. 4. 18.부터 위 'ㄴ'부분 토지 97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4,810원의 비율로 계산한
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, 원고와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

피고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1. 12. 15. 세종특별자치시 D 답 935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여 2011. 12. 21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는 2014. 1. 22. 그 인접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E 종교용지 605m²(이하 '인접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여 2014. 1. 28.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그런데 피고가 인접토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1, 22, 23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ㄷ'부분 1m², 별지 도면 표시 24, 25, 26, 27, 28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ㄹ'부분 1m², 별지 도면 표시 28, 27, 29, 30, 31,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ㅁ'부분 40m²(이하 '이 사건 건물부분'이라 한다)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고,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토지 97m²(이하 '이 사건 토지부분'이라 한다)를 점유하고 있었다. 다. 한편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6. 3. 30. 피고로부터 인접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2016. 4. 18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2014. 1. 28.부터 그 소유권

상실하여 점유도 상실한 날의 전날인 2016. 4. 17.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차임은 합계 757,833원이고,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2016. 4. 18.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 차임은 월 24,81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4호증, 을 제1호증, 측량감정축탁결과, 임료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57,83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유권 상실일인 2016. 4. 18.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. 9. 7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나.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,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며,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6. 4. 18.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24,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승곤

별지